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학 부 모 위 원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 원 위 원	해당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지 역 위 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가. 학교운영위원회

1) 위원장

-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다.
-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선포하며,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

- 학교운영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4)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우리도의 경우 공립학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 직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사립학교는 정관에 의함)

나. 소위원회

1)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소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교직원, 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다.

3) 소위원회의 종류

-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 그 밖에 교육과정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에 학교급식, 학교의 예·결산 등 중요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이다.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건 접수 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다.

5)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처리

-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 심의, 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 조사 기구이므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결정할 수 없고,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용 어 설 명

- 안건(案件) : 논의 대상이 되는 사안
- 의안(議案) :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
- 의제(議題) :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의 제목,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
- 개회(開會) : 개최되어 활동의 시작
- 개의(開議) :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
- 정회(停會) : 회의를 일시 중지함
- 폐회(閉會) : 회기가 종료됨
- 산회(散會) :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짐
- 유회(流會) : 성원 미달이나 그 밖의 이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아니함
- 유고(有故)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 생 수	위 원 수
200명 미만	5 ~ 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 ~ 12명
1천명 이상	13 ~ 15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단, 신설학교는 개교일 학생 수 기준)

☞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 해당연도 3월 1일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위원정수는 유치원 교원대표 1명, 학부모대표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구 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 원 위 원	30% ~ 40%	20% ~ 30%
지 역 위 원	10% ~ 30%	30% ~ 50%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조례 제2조제8항)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조례 제3조제4항)

※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학생수 (해당년도.3.1)	운영위원정수 (명)	학부모위원 (30~50%)	교원위원 (10~45%)	지역위원 (10~45%)
100명 미만	5	2	2	1
		2	1	2
	6	2	2	2
		3	2	1
		3	1	2
	7	3	2	2
		3	3	1
		3	1	3
	8	3	3	2
		3	2	3
		4	3	1
		4	1	3

※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학생수 100명 이상인 경우)

학생수 (해당년도.3.1)	운영위원 정수 (명)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학부모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
100명이상 200명미만	5	2	2	1	2	1	2
	6	3	2	1			
	7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8	4	3	1	3	2	3
200명이상 1천명미만	9	4	3	2	3	2	4
	10	4	4	2	3	2	5
		5	3	2	4	2	4
		5	4	1	3	3	4
		4	3	3	4	3	3
	11	5	4	2	4	3	4
	12	5	4	3	4	3	5
		6	4	2			
1천명이상	13	6	4	3	4	3	6
		6	5	2	5	3	5
	14	6	5	3	5	3	6
		7	5	2	5	4	5
	15	6	6	3	5	3	7
		7	6	2	6	3	6
		6	5	4	6	4	5
		7	5	3	5	4	6

2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가.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또는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라. 시정명령 신청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2)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가.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나.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 :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 : 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
  - 지역위원 :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가. 위원의 제척(除斥)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나. 위원의 기피(忌避)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위원의 회피(回避)

-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자 격 요 건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유무조회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 조회 실시
[결격(Y)이 나왔을 경우에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내용 확인]

·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지역위원 추천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안내 및 징구필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례 제4조)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연임'은 1기 임기 후 2기 선출을 통해 연임 가능. 같은 학교에서는 3기를 쉬어야 4기에 선출 가능, 다른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을 처음부터 할 수 있음

나.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다.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로 한다.

라.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연임 : 정해진 임기가 끝난 후 다시 계속하여 선거에서 선출되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중임 : 직위나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하며, 중임을 제한할 경우 다시는 그 직책을 맡을 수 없음

3.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및 퇴직 사유

가.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조례 제5조제3항)

나. 당연퇴직 (조례 제7조제1항)

-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다. 운영위원회 의결로 퇴직 결정 (조례 제7조제1항)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라. 자격상실

-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 공무수행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선거 공고 시 반드시 자격요건에 대하여 공지하고 후보등록 시 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의 해석>

- **제한의 대상**
  - 시행령은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가 거래하는 것도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
  -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되므로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나,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지위를 남용한 거래가 제한됨
    * 운영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는 것,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 비용으로 식사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음
- **지위남용의 판단 기준 예시(안)**
  - 다음과 같은 예시(안)을 토대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①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경우(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 한 경우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라북도교육청 수의계약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③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④ 계약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⑤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 특정 운영위원의 존재 또는 소개, 알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나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 진행된 경우

학교운영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운영위원은「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위원'에 해당**

○ **적용 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적용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정관) 점검	○매년 3월 1일자 학생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및 선거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가능. 단, 자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후 가능 (업무편람 P.401 참조)
⇩	
선거공고 및 홍보, 입후보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공고 및 홍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 가능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거결과 홍보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결과 홍보

☞ 운영위원의 선출시기 및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또는 학교규정으로 정함

5. 학교운영위원 선출일정 예시

순	기 한	선출업무내용	비 고
1	~ 2월말까지	규정 제.개정	필요한 경우 의견수렴
2	2 ~ 3월중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거 안내, 홍보	다양한 홍보매체 이용
3	3월 6일이전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각각 구성
4	선관위구성후 ~ 3월14일이전	선거공고	
5	선관위구성후 ~ 3월14일이전	입후보 등록	충분한 기간확보
6	등록마감일 ~ 투표전일	선거인 명부작성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교부용
7	등록마감일 ~ 투표전일	선거공보	충분한 기간확보
8	3월 21일까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
9	3월 30일까지	지역위원 선출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6. 선출일정 캘린더(예시)

월일 / 추진일정		3월6일 이전	7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1
교원위원선출	공립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입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표	당선자 공고 및 결과홍보										
	사립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교원 위원 추천 / 입후보 등록			선거 공보				투표	교장 위촉 · 수락		당선자 공고 및 결과홍보										
학부모위원선출		선출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입후보 등록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투표	당선자 공고 및 결과홍보										
지역위원선출																학부모, 교원위원 당선자 회의 (지역 위원 추천)								투표		

※ 선거인 명부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무투표 시 생략 가능)

※ 입후보등록서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

7.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가.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자체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것

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관리위원회위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선출관리위원회는 행정실, 교육활동지원실 등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구성되어서는 아니되며,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각 부서별로 골고루 배정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선출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함

8. 선출관리위원회의 임무

가. 선출관리위원회는 세부운영방법 또는 업무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객관성 있는 선거관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각 구성원간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 공고 및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접수, 결격사유 조회,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 투·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선거회의록 작성, 당선자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9. 선출시기

가. 정시선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3월 30일)까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선출 절차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나. 보궐선출

- 요건 : 위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여야 하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시기 및 방법 : 보궐선출에 대한 시기나 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되, 원활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그 방법은 정시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신설학교 위원선출

- 시기 :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방법 : 위원선출은 정시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

10. 위원선출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가. 타당성 검토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법인정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나. 규정의 개정을 통한 불법적, 비민주적 요소 제거

다. 규정 개정 시 유의사항

- 학교운영위원의 입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작성 심의한다.
- 학교운영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반드시 개정자료를 위원회 개최 7일전에 각종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

라. 운영위원의 정수 확인

- 정수산정 기준일 : 3월 1일 현재 학생수 기준(조례 제2조제6항)
- 운영위원 정수 조견표 참조
- 학생수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확인한 후 정수를 확정한다.
- 병설유치원과 통합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정수와 별도의 유치원운영위원정수를 합하여 재적위원으로 한다.

마. 운영위원회규정 사항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방법, 공고,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공보, 투표, 당선자결정 등

11. 학교운영위원 선출 전 점검 사항

- **기표방식 명시 여부**

  - 운영위원의 선출 방법이 “무기명 비밀투표”인 경우 기표 방식 (연기명 또는 단기명)을 결정할 것

- **「연기명」일 경우** 기표 인원수 및 유·무효표의 범위 명시 여부

  ① 연기명 기표인원이 3명인데, 2명 또는 1명만 기표한 경우?
  ▶ 선관위 유권해석 - 유효 처리
  ② 연기명 기표인원이 3명인데 4명 이상으로 기표한 경우?
  ▶ 선관위 유권해석 - 무효 처리

- **무투표 당선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

  - 정원이내에 입후보시 무투표 당선됨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삽입
    -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
      ▶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개표결과 동 득표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

  -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 명시 여부**

  -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거나, 「재선거」를 실시

- **학부모위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학교에서는 간접선거를 하게 된 사유 및 방법을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 여부**

  - 학급별 대표 인원수와 학급별 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 포함
    ※ 학부모 참여율 저조 등은 간접선거의 사유가 되지 못함

잘못된 위원 선출 사례

선거홍보 및 선출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선거홍보 관련

-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구성비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항)

규정에 근거 없이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학부모위원

- 학교 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두는 경우

지역위원

- 지역위원 선출에 학교 교직원이 특정인(학부모 등)을 지정하여 선출한 경우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자가 정수 초과임에도 지역위원 조건으로 사퇴시킨 후 사퇴한 학부모를 정당한 절차없이 지역위원으로 당선시키는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1. 선출방법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부득이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운영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신임 위원의 선출 절차와 동일하게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함

직접선출

●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이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 홍보가 필요하다.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 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한다.

-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전체회의(직접투표)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만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간접선출

●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해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학교 선거 공보 시 입후보자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에 의한 선출

2. 직접선출

①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선 거 홍 보	○**내용** :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기능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근거** : 조례 및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구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
⇩	
선 거 공 고 및 홍보	○**내용** : 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③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후 보 자 등 록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조회 실시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 조회 실시[결격(Y)이 나왔을 경우에 등록기준지(시.구.읍.면)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내용 확인]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선 거 공 보	○**내용** : ①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 나이, 성별, 경력, 소견) ②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투 표 용 지 및 투 표 장 준 비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성명,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 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 위원장의 확인이 필요 ○**투표장**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	
투표실시 및 개표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투표절차** :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투표용지수령→기표→투입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	
당 선 자 공 고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선 거 결 과 홍 보	○**내용**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

②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선 거 홍 보	○직접투표와 동일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직접투표와 동일
⇩	
선 거 공 고 및 홍보	○직접투표와 동일
⇩	
후 보 자 등 록	○직접투표와 동일
⇩	
결격사유 조회 실시	○직접투표와 동일
⇩	
선 거 인 명 부 작 성	○직접투표와 동일
⇩	
투 표 용 지 준 비	○직접투표용, 가정통신문 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각각 2부씩 제작
⇩	
선 거 공 보 및 투 표 용 지 발 송	○선거공보물 발송 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 동봉
⇩	
가정통신문 또는 우편 투 표 용 지 회 수	○**회수방법** ① 학생편 : 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② 우편 : 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송 ※ 투표용지는 소정의 기간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함 ※ 보관 : 회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	
투 표 실 시	○**투표절차** :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학부모의 이중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해 투표하도록 함(입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투표방법은 직접투표에 준함)
⇩	
개 표	○직접투표가 끝난 후 직접투표함과 가정통신문 또는 우편투표함을 함께 개봉하여 개표함
⇩	
당 선 자 공 고	○직접투표와 동일
⇩	
선 거 결 과 홍 보	○직접투표와 동일

3. 간접선출

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

선 거 홍 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 거 공 고 및 홍보	
⇩	
후 보 자 등 록	
⇩	
결격사유 조회 실시	○직접투표와 동일
⇩	
선 거 인 명 부 작 성	○직접투표와 동일
⇩	
선 거 공 보	○직접투표와 동일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직접투표와 동일
⇩	
투 표 실 시	○직접투표와 동일
⇩	
개 표	○직접투표와 동일
⇩	
당 선 자 공 고	○직접투표와 동일
⇩	
선 거 결 과 홍 보	○직접투표와 동일

학 부 모 회 개 최
⇩
대의원 후보자 등록
⇩
투 표 실 시
⇩
학급별 대표 선출

5 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해당 학교 교원의 대표자이다.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 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학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 감각이 자질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1. 선출방법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사 립 학 교

-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선출절차는 국·공립학교를 참고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 운영위원 입후보시 교직원 ○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되었을 경우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입후보자) 수**를 기표방식(단기명, 연기명)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규정에 명시

교직원 중 직원의 범위

- 국·공립학교 : 정규 공무원
- 사립학교 : 사무직원

기간제 교사에게 선거권 부여 여부

-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음

2. 선출 절차(국·공립학교)

선 거 홍 보	○ **내용** :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기능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등에 게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으로 구성
⇩	
선 거 공 고 및 홍보	○ **내용** : 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후 보 자 등 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선 거 공 보	○ **내용** : ①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②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투 표 실 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 결정
⇩	
당 선 자 공 고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3. 선출 절차(사립학교)

선 거 홍 보	○ **내용** :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기능 ②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③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등에 게시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구성** :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직원으로 구성
⇩	
선 거 공 고 및 홍보	○ **내용** : ①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후 보 자 등 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선 거 공 보	○ **내용** : ①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②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 내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활용
⇩	
투 표 실 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 및 추천자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 후 추천자 결정
⇩	
학 교 장 위 촉 및 승 낙 요 청	○ 해당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 중 교원위원 정수를 학교장이 위촉
⇩	
수 락	○ 교원위원이 수락
⇩	
당 선 자 공 고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6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 졸업생 등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학부모들이나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선출방법

- 지역위원은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선출 절차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완료	○조례 및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기한 내 선출 완료
⇩	
회의소집 통지 공문 발송 (지역위원 추천)	○당선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에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공문 발송 ○지역위원 자격, 선출방법, 지역위원 추천 등 기재 ○피추천자의 운영위원 자격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한 후 추천(당선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지역위원 추천·등록	○피추천자의 지역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 ○수락시 추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및 제출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결격사유 조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결격사유 조회 실시
⇩	
회의개최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됨에 따라 거수 등의 방법은 불가함
⇩	
당선자 공고	○당선 사실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학부모에게 안내

7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 선출

가. 선출시기 : 최초의 임시회(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나. 인　　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다. 대　　상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라. 선출방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 추천 후 무기명 투표 각 1회 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 없을 시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 (조례 제8조)

마. 선출절차

안건발의	○학교장이 안건 발의
⇩	
임시회 소집	○임시회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위원에게 의안 송부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4월 15일까지 소집함
⇩	
임시회 개최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또는 연장자)이 임시회 진행
⇩	
제1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후보 추천 후 무기명 투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
⇩	
위원장 선출	○위원장 당선 결정 후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 ○임시위원장은 신임위원장에게 사회 교대 - 이후 회의는 신임위원장이 주재
⇩	
부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당선 결정 후 부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
⇩	
제2안 다른 안건 심사	○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	
폐회	○폐회